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442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12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 경위

동 건의안은 김생환 위원 외 1인이 서면 동의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2013. 7. 12.)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됨.

2. 주 문

- 제8대 서울시의회는 국가의 대계가 걸려있는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올해 무상보육 예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전액지원, 지방정부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확대 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제안이유

- 무상보육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요청의 결과임에도 중앙-지방정부간 불합리한 자원배분으로 인하여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바,

이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무상보육 자원 지원 확대 및 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강력히 촉구·건의하기 위함.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부(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5. 불 입 :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의 전면 확대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 주도로 정책을 시행하고 재정부담은 대부분 지방이 부담하는 현재의 중앙-지방간 재원분담 구조하에서의 무상보육은 지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는 국가의 대계가 걸려있는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우선, 무상보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서울시 소요예산은 총 1조 656억 원으로, 이는 '06년도의 1,08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10배가량 급증했다. 그럼에도 현재 서울시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은 8년째 '06년도 수준인 20%(타 시도의 경우 5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2년에 이은 '13년의 전면 무상보육사업으로의 확대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방정부(특히 서울의 경우 80%)에 전가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유사 복지사업의 국비기준보조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0%, 장애수당 50% 등)이다. 영유아 보육사업도 유사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전국적·통일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고보조비율을 유사 복지사업의 수준으로 상향조정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요청의 결과인 무상보육 사업의 실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올해 무상보육 예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전액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

서울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 부약속(12. 9.13.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임원단 간담회시 공식 약속)에 따라 '13년도 영유아 보육 예산을 '12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무상보육 확대와 더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율이 상향될 것을 기대하였 으나, 무상보육 대상은 국회 주도로 일방적으로 확대되고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8개월 이상 미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12년 대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3,707억원(시비 2,466억, 구비 1,241억)에 이르며, 이는 '12년 부족예산이 1,751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것이다.

그럼에도 국고보조를 상향 등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이번 무상보육 예산부족 사태가 전적으로 서울시의 지방비 편성 부족으로 인한 것인 양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확산시키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무상보육 예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확대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이 되는 지방재정의 문제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이는 세원의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80%의 재원을 가져가고 지방정부는 20%의 재원을 갖고 출발하지만, 실집행 내역에서는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의 재원을 사용(지방교육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의 복지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감당해야할 복지재정 몫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의 재정을 부담시키는 법령 제 개정시 그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단지 중앙부처인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만을 듣도록 규정(지방재정법 제25조)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재정의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른데에는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 그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지방정부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확대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시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만을 듣도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상의 영유아 보육예산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우려하던 지방재정의 문제가 표면화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금번의 건의안이 그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 건의안을 적극 수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난을 해소하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3. 7. 1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